

1. 안전보건교육규정 內 인터넷 원격교육 관련 지침 <'24. 1. 1.부터 개정 시행>

-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 학습진도율평가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학습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과목별 학습을 마친 후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은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서 불합격한 교육생이 해당 과목의 과목별 교육시간을 90%이상 재학습한 경우 시험을 3회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 다른 형태의 교육(집체 등)과 동일하게 인터넷 원격교육도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강사가 되어 직접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과 고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2023. 5. 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 5. 22.,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3.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

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 제2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 제5조(위험성평가 실시주체)

-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1. 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해야 한다.
 - ② **평가의 배점기준 중 학습평가의 배점은 80%이다.**
 - ③ 평가의 배점기준 중 학습진도율은 20%이다.
 - ④ 이수 기준은 총득점은 70%이상이다.

2. 안전보건교육의 과목별 최소 학습진도율은 **90%**이다.

3. 과목별 평가에서 진도 : 평가의 배점 기준은 **20% : 80%**이다.

4. 과목별 평가에서 과목별 수료의 최저 점수는 **70점**이다.

5. 인터넷 원격교육의 기준에서 정한 교육관리는 다음과 같다.
 - ① 대리수강은 금지된다.
 - ② 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은 금지한다.
 - ③ **순차학습을 통하여 진도를 나가지 않은 페이지는 빨리감기 작동이 금지된다.**
 - ④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한다.

6. 인터넷 원격교육의 필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본인 인증
 - ② 과목별 진도율 90% 이상
 - ③ 평가 응시
 - ④ **총점 70점 이상이 수료 조건이다.**

7. 인터넷 교육관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인터넷교육은 반드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②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평가는 주어진 교육기간 내에 응시 및 제출한 것에 한정하여 득점으로 인정한다.**
 - ④ 평가는 학습평가, 과제평가, 학습진도율 평가로 구성할 수 있다.

8. 인터넷 교육관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해야 한다.
 - ② **과목별 진도율 90% 미만인 경우에는 시험 자체를 응시할 수 없다.**
 - ③ 과목별 평가에서 7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다.
 - ④ 불합격자는 3회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9.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에는 채용시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이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포함되지 않는다.

10. 개정된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 ①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 ②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③ 판매업무 외의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 ④ 신규 채용시 교육은 8시간 이상

11. 적법한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방법에는 인터넷 원격교육, 우편통신교육, 사업주 자체 교육 등이 있다. 근로자 자율교육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③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부분)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사망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그 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 양벌규정(법인) :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2.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
 -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 /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 독성간염 / 혈액전파성 질병(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 렙토스피라증 / 탄저·단독·브루셀라증 / 레지오넬라증 / 감압병·공기색전증 / 산소결핍증 / 급성방사선증·무형성빈혈 / 열사병

3.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개인사업주에 한함)
-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 해당)
 *단,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4가지 조치 의무
 -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2)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산업안전보건법 상 기준 이상)
 -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8)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9) 도급, 용역, 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 *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 ②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안전·보건 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가능)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2)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5년간 보관하여야 함(소상공인 제외)

4. 안전보건교육과 공표

- 중대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이내) 의무(교육비용 본인부담)
 -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 주요 절차 - 교육기관, 교육일정을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대상자(중대산업재해 발생 기관·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통보, 연기요청(1회에 한함) 및 승인 여부 통보와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의 발급요청 및 발급에 관한 절차 포함
- 중대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형의 확정 + 법무부장관의 통보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1년간 게시, 소명기회 부여)
 - 주요 내용 - 해당 사업장의 명칭
 -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등의 위반사항 포함)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 재해의 발생 여부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 등으로 **일반 가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은 공무원, 법인, 사업주로 **재해를 일으킨 해당 작업의 근로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②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③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④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③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년 이상 발생한 경우

5.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④ **중대시민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된다.**

6.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
 -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7.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공중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 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 객차
- ②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 객차 중 철도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8.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종사자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해당된다.

- 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 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종사자에 사업주는 해당하지 않는다.

9.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경영책임자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해당된다.

- 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통상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을 말하는 것으로, **관리소장, 관리반장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10.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4조의 조치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중대시민재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④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의 절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법무부장관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인 2021년 1월 26일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험성평가 조문 읽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주요내용

[시행 2023. 5. 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 5. 22.,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3.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 제2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 제5조(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 제6조(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위험성 평가, 이렇게 하세요!

• Who 누가

- 사업주의 책임 하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관리감독자와 현장 근로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 When 언제

-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최초평가”,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정기평가” 방식으로 시기별 실시

• Where 어디에서

-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업무와 관계되는 장소

• What 무엇

- 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비·화학물질·작업방법 등 근로자에게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빠짐없이 찾기!

• How 어떻게

- 기존에 널리 활용하던 빈도·강도법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도 제시!

• Why 왜

- 근로자,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여서 안전일터를 조성하기 위함!

위험성평가 이렇게 바뀝니다!

현행	개정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제한적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정의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성평가' 정의에 빈도·강도를 추정·결정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어렵고 복잡하게 인식 	정의규정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성의 추정에 있어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행렬·곱셈·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현장 적용 곤란 	평가방법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도·강도를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 간편한 방법도 제시
평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정기·수시평가로 구성 *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 이후 시기 모호 [정기평가] 최초 평가 후 1년마다 [수시평가] 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변경 	평가지기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편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수시평가] 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실시 [정기평가]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 [상시평가] 월1회 이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 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관계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 실시하는 경우 수시·정기 평가 면제
근로자 참여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36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이행시에만 참여토록 제한 	소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성평가 소과정에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규정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성평가 결과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포함 TBM을 통한 확산 노력규정 신설

1. 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이 고시는 2023년 5월 23일에 전면 개정되었다.
- ② 이 고시의 근거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이다.
- ③ 이 고시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내용 중 개정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위험성 평가 목적 규정
- ② 평가 방법 다양화
- ③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
- ④ 위험성 평가 결과전반을 근로자 에게 공유

3. 위험성평가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새로 규정
- ② **체크리스트,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등 간편한 방법을 제시**
- ③ 최초평가 시기는 사업장 성립일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 ④ 전체 위험성평가의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협업을 강화

4.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 정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유해. 위험요인이란 유해,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 ② 위험성이란 유해, 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 ③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 ④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는 처벌한다.**

5. 고시 제5조의 위험성 평가의 실시주체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

-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받은 수급인
- ④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6. 고시 제5조의 2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 위험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요인
- ②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고시 제7조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위험성 평가의 방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 ②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 ③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할 것
- ④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시에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8. 고시 제7조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④ 사업주가 법이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9. 고시 제16조 인정신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노동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사업장을 일괄하여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도 위험성평가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0. 고시 제2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사업장 컨설팅
- ②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
- ③ **고시 제27조 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및 그 밖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사업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11. 고시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위험성평가에 관해 할 수 있는 권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공단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교육, 평가담당자 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공단이 실시하는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③ 공단은 근로자 수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전년도에 공시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가 200위 초과인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의 사업주로부터 제5조제3항에 따른 컨설팅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에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컨설팅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 지사장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직접 선정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12. 고시 제26조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고시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
- ② 고시 제25조에 따른 컨설팅지원
- ③ 공단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의 실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용자 및 보조업무처리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④ **고시 제27조 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및 그 밖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위험성평가란?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 위험성평가를 하려면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강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빈도),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지, 근로자의 의견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특징 요약

- ▶ (지속적인 과정)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검토와 업데이트가 필요한 지속적인 과정임
- ▶ (법적 규정 준수)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의 요구사항을 만족토록 관리할 수 있음
- ▶ (근로자의 참여) 근로자는 위험성평가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잠재된 유해·유해요인과 필요한 조치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 수행
- ▶ (조직 문화 강화) 위험성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들은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음
- ▶ (다양한 도구와 방법론)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위험성분석, 평가를 위한 다양한 도구와 방법론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교육과 훈련에 활용) 근로자는 위험성평가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훈련되고 정기적인 교육에도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 (비용 절감)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의 손실은 매우 큼. 위험성평가는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관리함으로써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여 사업장의 손실비용을 줄여줌

2. 위험성평가 용어 정의

<고시> 위험성과 유해·위험요인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3.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위험성평가의 도입 배경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70년대부터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규율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

4. 2023 주요 변경내용

- ① 어려운 위험성평가를 쉽게 재정의
- ② 쉽고 간편한 평가방법을 제시
- ③ 평가시기를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의 부담을 낮춤
- ④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함
- ⑤ 위험성평가 결과는 모든 근로자가 알아야 함
- ⑥ 아차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5. 위험성평가의 핵심 포인트

- ▶ 위험성평가는 왜 하는 것일까? 핵심 중의 핵심은?
 - ① "위험을 찾으면 안전이 보입니다."
 - ② "사업장의 위험은 근로자가 가장 잘 압니다."
-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 근로자의 참여와 결과의 공유

1. 위험성 평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는 것
- ②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는 것
- ③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 ④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은 반드시 기록, 보존해야 한다.**

2. 위험성 평가시에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위험성평가를 하려면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강도), 얼마나 자주 일어 나는지(빈도),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지, 근로자의 의견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한다.**
- ②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강도)
- ③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빈도)
- ④ 산업재해나 아차사고의 사례는 있는지

3. 위험성평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근로자는 위험성평가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훈련되고 정기적인 교육에도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유해,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검토와 업데이트가 필요한 지속적인 과정이다
- ③ 근로자는 위험성평가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잠재된 유해, 유해요인과 필요한 조치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수행을 한다.
- ④ 사전에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관리함으로써 사고나 질병을 예방, 사업장의 손실비용을 줄여준다.

4. 위험성평가를 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근로자 생명보호
- ② 산업재해로 인한 생산성이 저하 방지
- ③ 기계 손상 등 사업주의 손해 방지
- ④ **위험성 평가는 근로자 생명보호의 근본적인 목적 이외에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계가 손상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어 사업주와 그의 사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위험성 평가 실시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위험하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닥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② 사업주는 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이고 최적의 사용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6. 위험성 평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위험성 평가는 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이다.

②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작업을 통해 미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

③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 개선하는 과정

④ 위험성의 판단결정에 그치지 않고 개선대책 마련이행으로 이어지는 상시적 체계

7.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잘 아는 사람은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이다.

② 위험성 평가는 근로자가 참여해야만 현장에서 실제 실행이 가능한 제도이다.

③ 위험성평가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위험성평가 결과의 공유 등 전체 과정에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잘 아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다.

④ 외부 컨설팅 등은 경비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실행 가능성에 어려움이 따르는 개선 방식이다. 위험성평가에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면 현실적이고 쉽고 간단한 개선 방식을 도출하여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8. 위험성 평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는 한 번의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추가되는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의 수준이 변화하는 유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검토와 결과 업데이트가 필요한 지속적 과정이다.

② 위험성 평가는 그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위험성이 허용 가능할 때까지 줄이거나 위험성을 아예 제거하고자 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과정이다.

③ 위험성 평가는 새롭게 추가되는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의 수준이 변화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검토와 결과 업데이트가 필요한 지속적 과정이다.

④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나서도 위험성은 남아 있게 마련이므로, 근로자들이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한 상시적 공유가 중요하다.

9. 위험성 평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지속적인 과정

② 법적 규정 준수

③ 근로자의 참여

④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의 손실은 매우 크다. 위험성평가는 사전에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관리함으로써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여 사업장의 손실비용을 줄일 수 있다.

10. 위험성 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사전준비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 제도, 평상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단계이다.

③ 위험성 결정은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판단 하고 결정하는 단계이다.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은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이다.

11. 위험성평가 실시후 기록및 공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을 기록한다.
- ② 각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과 그 위험성 수준을 결정한 방법을 기록한다.
- ③ 위험성평가 실시 후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다.
- ④ 기록들을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해야한다.**

12. 위험성평가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① 유해위험요인이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들을 의미한다
- ②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 ③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의미한다.
- ④ **유해위험요인은 기계기구, 물질, 작업방식 등에 고유하게 내재되어 있어 고정되어 있는 한편, 위험성은 개선 조치를 실시하면 줄어들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 ① “사업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위험성평가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 ② 도급 사업인 경우에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도급사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도급사업주의 의무는?

(정의)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단,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됩니다.

○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합니다.

○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참고

(도급인의 의무) 일반적으로 도급인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으므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여됩니다.(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는 제외됩니다.)

2. 위험성평가의 대상

- ①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의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실시
- ② 위험성평가의 대상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이 된다.
- ③ 사업장 내에서 아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차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아차사고

- 생명·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하며, 아차사고가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통상 산업재해로 이어짐

▶ 하인리히법칙(1:29:300법칙)

-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

-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하므로 문제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

④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근로자의 참여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각 절차에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사업주와 함께 사업장의 위험성 수준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③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④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⑤ 근로자들은 위험성 감소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4. 위험성평가의 방법

위험성평가의 방법에는

①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② 체크리스트법

③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④ 핵심요인 기술법 등이 있다.

가.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위험성 결정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고·중·저”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

나. 체크리스트법

●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방법은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 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이다.

● 일반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 “○” 또는 “×” 등으로 표시하여,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 체크리스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체크리스트의 작성이므로, 법령, 고시 및 지침을 참고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의 주도 하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다만, 체크리스트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작성되었거나, 주관적으로 작성된 경우, 중요한 유해·위험요인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 [예] 이 프레스는 위험한가?(x) → 이 프레스는 작업 시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다. 핵심요인 기술법

-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
- 전등교체, 부품교체 등 유해·위험요인이 적고 간단한 작업에 대해서는 한 장으로 위험성평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라. 빈도·강도법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활용)

- 빈도·강도법은 사업장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를 산출해 보고, 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에서 기존에 5단계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위험성평가 과정을 도와주고 기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방법을 안내한다.

1.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다.

- ① 사업주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대상 작업과 상관없는 모든 근로자는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가 아니다.

2. 위험성평가 주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들, 근로자가 함께 참여해야한다.
- ② **위험성평가에는 사업주,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들, 근로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 그러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 ③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지만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 ④ 사업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위험성평가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3. 도급 사업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도급 사업인 경우에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② 수급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한다.
- ③ 도급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 및 시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고 그것을 변경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
- ④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 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4. 고시 제8조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에 준수해야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사전준비
-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③ 위험성 결정
- ④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해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

5. 위험성 평가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할 유해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업무 중 근로자 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된 모든 유해위험요인
- ② 업무 중 근로자 에게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 ③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

6. 아차사고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아차사고란 사업장 내에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의미한다.
- ② 아차사고는 생명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한다.
- ③ 아차사고는 향후 얼마든지 그 유해·위험요인 으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④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얼마든지 그 유해·위험요인 으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아차사고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지게차로 파이프를 옮기던 도중 작업자를 치이게 할 뻔 한 사고
- ② 철근다발을 묶은 철선이 하중에 의해 풀리면서 근로자가 깔릴 뻔 한 사고
- ③ **아차사고란 사업장 내에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의미한다.**
- ④ A형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사고

8. 하인리히 법칙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1: 29: 300 법칙이라고도 한다.
- ② 300건의 무상해사고(아차사고)를 방치하면 29건의 경상이 발생되고,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1건의 사망재해 사고로 이어진다.
- ③ **하인리히 법칙은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하므로 문제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 ④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

9. 고시 제6조 근로자 참여규정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 ① 해당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 ②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 ③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④ **고시 제9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는 사업주의 책임이다.**

10.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각 절차에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②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바로 그 작업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근로자를 참여 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 ③ **위험성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는 근로자는 위험성평가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이다.**
- ④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근로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건설현장 등 근로자의 참여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관리감독자의 참여도 근로자의 참여로 인정이 가능하다.

11.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위험에 직접 노출되므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이므로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 ③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 ④ 근로자들은 위험성 감소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여부 확인에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12. 고시 제10조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 ①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② **사업장 순회점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 ④ 설문조, 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13.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하는 작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임시·수시·비정형 작업 시에는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② 근로자가 작업에 익숙하지 않거나, 사업장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단시간 근로자가 작업하기 때문에 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더욱 높다.
- ③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한 반복작업
- ④ 아차사고는 반복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위험성평가는 실시 시기에 따라 최초, 수시, 정기, 상시평가로 구분되고, 두 가지 진행 방법이 있다. 하나는 “최초평가-수시평가-정기평가”의 진행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최초평가-상시평가”의 진행 방법이다. 사업장에서는 공정이나 기계·물질의 변동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지 아닌지에 따라 두 가지 흐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최초평가

●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이 걸리는 작업이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개시 이후 지체없이 최초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시평가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기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평가

● 최초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면, 그동안 실시한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재검토 작업은 위험성평가 결과에 빠진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때 결정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제대로 결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상시평가(수시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

● 상시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여 일일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도입한 제도로서,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최초평가는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와 똑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공정·기계·기구·물질 변화가 매우 커서 처음부터 전체 공정이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향후 예상되는 공정들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상시평가 체계도



1. 고시 제11조 위험성 결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라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고시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2. 사업주가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빈도강도법**
- ② 체크리스트(Checklist)법
- ③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 ④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위험성 수준을 상, 중, 하 또는 고, 중, 저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는 방법
- ② 위험성 수준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
- ③ 어떤 기계를 작동할 때의 위험성이 '상'으로 분류되었을 때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므로 신속히 위험성을 '하'로 낮추기 위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한다.
위험성의 각 항목에 대해 ○ 또는 × 등으로 표시하여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체크리스트법이다.

4. 체크리스트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위험성 수준이 높지 않고, 유해위험요인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내용에 따른 방법은 핵심요인 기술법이다.**
- ② 위험성의 각 항목에 대해 ○ 또는 × 등으로 표시하여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 ③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체크리스트의 작성이므로, 법령, 고시 및 지침을 참고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의 주도 하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④ 체크리스트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작성되었거나, 주관적으로 작성된 경우, 중요한 유해·위험요인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5. 핵심요인 기술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안내한 내용에 따른 방법이다.
- ② 위험성 수준이 높지 않고, 유해위험요인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용한다.
- ③ **사업주는 한 가지 방법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업장에 따라 적절하게 조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
- ④ 전등교체, 부품교체 등 유해·위험요인이 적고 간단한 작업에 대해서는 한 장으로 위험성평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6. 고시 제15조에서 정한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 ① 최초 위험성 평가
- ② 수시 위험성 평가
- ③ **정기 위험성 평가**
- ④ 상시 위험성 평가

7. 고시 제15조에서 정한 위험성 평가 실시시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법이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가 고시 제15조 제4항의 상시 위험성평가를 할 경우, 고시 제15조 제2항의 수시 위험성 평가과 제3항의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된다.**

8. 최초 위험성평가지 사전준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

- ① 평가의 목적 및 방법
- ② 평가시기 및 절차
- ③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 ④ **결과의 기록·보존**

9.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 ①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②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③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④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여부는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평가의 내용이다.**

10.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②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한 경우의 수시평가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중 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11.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 ①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 ② 최초 위험성 평가 이후 1년 이내에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도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 ③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④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는 정기 위험성 평가에서 고려해야 된다.**

12. 상시평가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① 매월 위험성 평가 실시
 - ② 매주 위험성 평가 실시
 - ③ 매일 위험성 평가 실시
- 매 시간 위험성 평가 실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13. 상시 위험성 평가로 인정되기 위해서 고시 제15조 제4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11조의 위험성결정 및 제12조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을 할 것
- ②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 ③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주지할 것
- ④ **고시 제15조 제4항이 정한 상시 위험성 평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월, 매주, 매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사전준비

- 사전준비는 위험성평가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
-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자에 대한 교육
- 위험성 수준과 그 판단 기준 등의 설정
-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사전 조사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위험성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이다. 유해·위험요인을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위험성을 가늠해볼 수도 없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수립 대상에서도 누락되기 때문이다.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근로자와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 위험요인에 대한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상황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업장 순회점검은 사업주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담당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그리고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기계·기구, 설비와 작업방법 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 점검 이후에는 점검팀 회의를 통해 유해·위험요인 중 빠진 것은 없는지, 바뀐 사항은 무엇인지 논의하고 공유해야 한다.
-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 설문조사·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예상하지 못했던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거나,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꼭 기존의 유해·위험요인에 추가하여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위험성의 결정

- 발견한 유해·위험요인들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이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할 차례
- 상·중·하 3단계로 위험성을 구분하기로 했다면, 유해·위험요인별로 위험성을 상·중·하로 표시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

- 위험성 수준의 결정과 '허용 가능한지'의 판단
- 우리 사업장에서, 사전준비 시에 마련해놓은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 같을 경우 위험성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위험성평가 방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성평가의 방법으로는 ①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② 체크리스트법, ③ 핵심요인 기술법과 함께 기존에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활용되던 ④ 빈도·강도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4.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과 실행

-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하나하나 위험성을 결정하고, 결정한 후 허용 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위험성을 가진 유해·위험요인들에 대해서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성을 낮추는 대책이 필요하다.
- 먼저, 위험성 수준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에는 고려하여야 할 순서가 있다.
-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위험성의 수준이 높은 것부터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실시
- 사업장에서는 개선조치를 한 후에는, 조치한 방법이 제대로 위험을 줄였는지를 확인
- 방법이 잘못되어 위험성 수준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즉각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조치
- 감소대책을 수립·이행해도 남아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 수준의 위험성으로 결정되었지만 위험한 사항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남아있는 위험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알려져 작은 사고라도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위험성평가의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이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근로자들은 그것을 잘 알고 반드시 유의하여야만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될 것
- 작업별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을 알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위험성 감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 위에 따라 알려야 할 사항을 교육하는 데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 일회적인 위험성평가 결과의 게시와 안전보건교육만으로는 위험성평가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
- 많은 유해·위험요인 중에서도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해당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통해 매 작업 전마다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유해·위험요인도 바뀌고 그에 따른 위험수준, 위험한 상황도 매일 바뀌기 때문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활용한 위험 줄이기 전략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6.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에는 '종료' 개념이 없다.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은 끊임없이 생기고, 공정이나 공법 변경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 위험성평가 결과 어떤 유해·위험요인들이 발견되었는지,
- 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 위험성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 위험성 감소대책은 무엇이며 그 시행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 그리고 위험성평가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였는지 등에 관해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앞으로의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
- 위험성평가 기록은 사업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의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위험성 평가의 모든 기록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위험성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지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유해위험요인 파악하는 방법에 설문조사, 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도 포함된다.

④ 유위험요인 파악하는 방법에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도 포함시킨다.

2. 위험성평가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①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기계기구설비원재료를 도입하거나 공정의 변경 등이 있어 유해위험요인이 추가되거나 위험성의 수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③ 만일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최초평가와 수시평가의 결과를 전부 재검토한다.

④ 최초평가 이후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게시주지 등의 방법을 통해 공유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3.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①사전준비, ②유해·위험요인 파악, ③위험성 결정, ④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⑤ 위험성평가의 공유, ⑥기록 및 보존으로 구분 가능하다.

② 위험성평가의 절차를 마쳤다고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에 해당된다.

③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닌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고 다시 위험성을 결정해야 한다.

④ **위험성 수준이 아닌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고 다시 위험성을 결정해야 한다.**

4. 위험성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사전준비에서는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을 확정한다.

② 유해, 위험요인파악 단계에서는 순회점검 등에 의해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다.

③ 위험성 결정은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단계이다.

④ **위험성평가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

5. 사업주는 고시 제9조의 사전준비 단계에서 최초 위험성평가를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해야하는데, 이때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평가의 목적 및 방법
- ②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③ 평가시기 및 절차
- ④ **근로자의 참여, 공유방법**

6. 상시적 제안이나 아차사고 발굴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사업장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유해·위험요인이 계속 변화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제도가 필수적이다.**
- ② 사업장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유해·위험요인이 계속 변화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제도가 필수적이다.
- ③ 아차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징후이므로, 아차사고 제보제안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 ④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제도는 오프라인 게시판, 포스트잇, 제안함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와의 SNS 톡 채널 등을 활용한 사진제보, 사내 전자게시판 등 온라인 상의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7. 사업주가 고시 제11조 제2항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에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위험성의 수준
- ②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 ③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④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8. 사업주가 고시 제12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할 때에 고려해야할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 ②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 ③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 ④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9. 고시 제12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수준이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0.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 ②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 ③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 ④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11.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확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위험성의 수준
- ②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 ③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 ④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12. 위험성 평가의 사전준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전준비는 위험성평가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이다
- ②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위험성평가 실시조직의 구성과 역할, 평가절차, 근로자에 대한 공유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정하여 작성해야 한다.
- ④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자에 대한 교육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목적, 실시 방법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연소 이론

- 연소는 물질이 공기 속의 산소와 반응하여 빛과 열을 내며 타는 현상을 말함
- 물질이 연소하려면 산소가 있어야 하고, 물질에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 온도와 탈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함
- 표면 연소(심부 화재)에서의 연소의 3요소 :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 반면, 불꽃 연소(표면 화재)에는 3요소 외에 추가로 '순조로운 연쇄반응'이 필요함
- 발화점은 '가연성 물질이 불꽃을 접하지 않고 불이 일어나는 최저의 온도'임
- 즉 가연성 물질이 불에 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며 착화점이라고도 함
- 인화점이란, '휘발성 물질에서 발생하는 증기가 공기와 섞여서 가연성 혼합기체를 형성하고, 여기에 불꽃을 가까이 댔을 때 순간적으로 섬광을 내면서 연소하는, 즉 인화하는 최저의 온도'를 말함
- 연소점은 가연성 액체에 점화원을 가져가서 인화된 후에 점화원을 제거하여도 연소를 지속할 수 있는 온도를 말함

2. 소화(消火) 이론

- 소화란 물질이 연소할 때 연소의 3요소인 가연물(연료), 산소 공급원(산소), 점화원(온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없애주어 연소를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소화의 종류 : 냉각소화, 질식소화, 제거소화, 화학소화(부촉매 효과), 희석소화, 유화소화, 피복소화
- 소화기는 가압방식에 따라 축압식과 가압식으로 나뉘며, 소화능력 단위에 따라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로 나뉨
- 소화기의 종류 : 물 소화기, 산 알칼리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청정소화약제 소화기, 분말 소화기, 포 소화기 등이 있고, 이 중 분말 소화기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음

1. 화재 이론

- 화재는 통제를 벗어난 광적인 연소 확대 현상으로 물체의 연소에 의해서 신체 또는 물적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말함
- 1년 중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겨울철이며, 이는 그 계절에 불의 사용도가 높기 때문임
- 겨울 다음으로 봄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보임
- 화재 원인 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고, 화재 장소 별로는 주택의 화재가 가장 많음
- 화재의 종류는 일반 화재(A급 화재), 유류 화재(B급 화재), 전기 화재(C급 화재), 금속 화재(D급 화재), 가스 화재(E급 화재), 식용유 화재(K급 화재)로 분류됨
- 우리나라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가스 화재를 유류 화재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고 소화 방법도 유류 화재와 대개 비슷함
- 그러나 미국의 경우 가스 화재를 E급 화재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식용유 화재를 공식적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나, 주방용 소화 설비를 식용유 화재에 적합한 소화 설비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구별하고 있음
- 화재는 소실 정도에 따라 전소 화재, 반소 화재, 부분소 화재로 구분하고 있으며, 화상도 1~4도 화상으로 구분하고 있음

2. 연소 범위와 폭발

- 가연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가 공기 또는 산소와 적당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을 때, 여기에 점화하면 연소가 일어남
- 적당한 혼합비율의 범위를 연소 범위 또는 폭발 범위라고 하며, 혼합 가스에 대한 용량%로 표시됨
- 연소 범위는 하한계가 낮을수록, 상한계가 높을수록,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온도(압력)가 상승할수록 위험함
- 폭발은 연소 현상의 한 형태로서 밀폐된 용기에서 갑작스러운 압력 상승으로 인하여 외부로 순간적인 많은 압력을 방출하는 것임
- 폭발은 폭연과 폭굉으로 구분됨
 - 폭연은 폭발적 연소라고 하는 의미로 단순히 연소라고 해도 좋으며, 폭발성 매체 속으로 전해지는 화염의 속도가 그 내부로 전해지는 소리의 속도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함
 - 폭굉은 전파속도가 초음속인 경우에 해당함
- 폭발은 물리적인 폭발, 화학적인 폭발, 가스 폭발, 분진 폭발로 분류됨
- 방폭 구조는 불꽃 또는 아크의 발생 또는 고온이 되어 점화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폭발을 방지하는 방법인데, 내압 방폭 구조 등 6종류가 있음
- 위험 장소는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따라 위험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말하며 0종 장소, 1종 장소, 2종 장소로 분류됨

1. 표면연소(심부화재)에서의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이다. 반면 불꽃연소(표면화재)에는 3요소 외에 추가로 순조로운 연쇄반응이 필요하다. **연소점은 해당되지 않는다.**
2. 가연물의 구비조건으로는 ① **열전도율이 작아야 한다.** ② 발열량이 클 것 ③ 표면적이 넓을 것 ④ 산소와 친화력이 좋을 것이다. 가연물은 열전도율이 작아야 하며 활성화 에너지(점화 에너지)도 작아야 한다.
3. 주수 소화 시 소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안개 모양으로 분무하여 방사** 하는 것이다. 무상주수를 하면 질식, 냉각, 희석, 유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 분말 소화기의 사용온도 범위는 우리나라의 사계절 기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40℃** 이다.
5. 소화기의 설치 장소는 ①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② 사용시 방출이 용이한 장소 ③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 ④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규정된 거리 이내의 장소
6. 자연 발화의 조건은 ① 주위 온도가 높을 것 ② 가연물의 열전도율이 작을 것 ③ **가연물의 발열량이 클 것** ④ 가연물의 표면적이 넓을 것
7. 경유 화재발생시 물로 소화할 수 없는 이유는 **연소면을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유류화재 시 주수 소화를 하게 되면 유류가 물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유류 표면이 분산되어 연소면(화재면)을 확대된다. 따라서, 경유 화재발생시 물로 소화해서는 안 된다.
8. **연소**란 빛과 열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을 말하는데 연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연물, 산소(공기), 점화원의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들 3가지를 연소의 3요소라 부른다.
9. A, B, C급 화재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분말 소화 약제는 **제3종 분말(인산암모늄)**이다. 제3종 분말 소화기는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1. 화상 부위가 분홍색으로 되고 분비액이 많이 분비되는 화상은 **2도 화상**이다. 2도 화상은 수포성으로 화상 부위가 분홍색으로 되고 수포가 생긴다.

2. 화재의 분류

- ① A급 화재는 타고나서 재가 남는 일반화재
- ② B급 화재는 유류화재
- ③ **C급 화재는 전기화재**
- ④ D급 화재는 금속화재

3. 폭굉(Detonation)은 ① 충격파에 의한 폭발의 진행 ② 초음속의 반응 확산 ③ 핵폭발 **초대형 산림 화재는 해당되지 않는다.**

4. 분진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은 유황,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 플라스틱 등이 있다. **석회 석 분말은 포함되지 않는다.**

5. A급 화재는 **목재**나 종이 등 일반 가연물의 화재로서, 타고나면 재가 남는다.

6. 유류화재를 일으키는 물질은 ① 가솔린 ② 알코올 ③ 페인트 이다. **나트륨은 금속화재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7. 가연성 기체 또는 액체의 연소 범위에 관한 설명은

- ① **연소 범위의 하한계가 낮을수록 발화 위험이 높다.**
- ②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발화 위험이 높다.
- ③ 연소 범위의 상한계가 높을수록 발화 위험이 높다.
- ④ 주위 온도가 상승할수록 발화 위험이 높다.

8. 화재의 조건은

- ① 불 자리가 아닌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불 자리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우발적인 것
- ② 불에 의한 연소 작용이 있을 것
- ③ 인명에 피해를 주거나, 재물을 소실시켜 손해를 초래시킬 것

열과 화염, 화재의 부산물로서 독가스나 유해가스, 연기 등을 발생시키는 것은 화재의 특성

9. 전기화재의 주요 요인은 전선의 합선 또는 단란에 의한 발화,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누전에 의한 발화이다. **겨울철 난방을 위한 전기 사용량의 증가는 전기화재의 직접적인 주요요인은 아니다.**

10. **건물의 30% 이상 70% 미만 소손됐을 경우의 화재 분류는 반소 화재.** 70% 이상 소손된 경우는 전소 화재.

1. 건축물의 화재성상

- 목조 건축물의 화재
 - 잘고 얇은 가연물이 두텁고 큰 것보다 더 잘 타는데, 이는 잘고 얇을수록 표면적이 커서 공기와 접촉 면적이 많아지고 입자 표면에서 열전도로 인한 열 방출이 적기 때문임
 - 목재 연소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목재의 비표면적, 온도, 수분함유량, 가열시간, 열전도율, 열팽창률, 공급 상태 등이 있음
 - 목조 건축물의 화재 진행과정 : 『화재의 원인 → 무염 착화 → 발염 착화 → 발화 → 최성기 → 연소 낙하 → 진화』
 - 목조 건축물의 화재 원인 : 접염, 복사열, 비화
- 내화 건축물의 화재
 - 목조 건축물의 화재 성상은 '고온 단기형'으로 빠른 시간에 고온에 도달하고 연소가 끝나는데 반해 내화 건축물의 화재 성상은 '저온 단기형'으로 최고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연소 종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림
 - 내화 건축물의 화재 진행과정 : 『초기 → 성장기 → 최성기 → 종기』
- 고분자 물질(플라스틱)의 화재
 - 플라스틱은 탄소를 함유한 고분자 물질이므로 다양한 분해 생성물과 연소 생성물을 함유하고 있음
 - 플라스틱의 연소 과정 : 『초기 연소 → 연소 증강 → 플래시 오버(Flash over) → 최성기 → 화재 확산』

2. 건축물의 내화성능

- 건축물의 내화 구조 및 방화 구조
 - 내화 구조는 화재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상의 내력(耐力)이 유지되고, 인접 화재로 인한 연소(延燒) 우려가 적으며, 화재 후에도 수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임
 - 방화 구조는 화재 시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방화 구조의 주목적은 연소(延燒) 방지임
- 건축물의 방화벽, 방화문, 방화 구획
 - 방화벽이란, 화재 시 연소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로 목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벽을 말함
 - 방화문은 화재 시 화염의 침투를 방지하고 화염의 전파를 최소화하며 피난경로를 확보하도록 설계된 출입문을 말함
 - 방화 구획은 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가 건축물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내화 구조의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구획을 말하며, 방화 구획은 면적별·층별·용도별로 구획됨
 - 불연 재료 등은 불연 재료(난연 1급), 준불연 재료(난연 2급), 난연 재료(난연 3급)로 분류됨

- 건축물의 방화계획
 - 방재 계획은 안전성 대응은 공간적 대응(대항성 대응, 회피성 대응, 도피성 대응)과 설비적 대응이 있음
 - 건축물의 방재 계획은 부지 선정 및 배치 계획, 단면 계획, 재료 계획, 평면 계획, 입면 계획 등이 있음
- 방재실
 - 방재실은 건물 내의 화재 정보를 총괄·집중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화재의 진전 상황을 파악하는 곳임
 - 방재실은 피난 층과 가능한 한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3. 피난 계획 및 안전 대책

- 건축물의 피난 계획
 - 피난 대책의 일반적인 원칙
 - ① 피난 경로는 간단명료하게 할 것
 - ② 피난 설비는 고정식 설비를 위주로 할 것
 - ③ 피난 수단은 원시적 방법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④ 2방향 이상의 피난 통로를 확보할 것
 - 화재 시 인간의 피난 행동 특성으로는 귀소 본능, 지광 본능, 추종 본능, 퇴피 본능, 좌회 본능 등이 있음
- 건축물의 안전 대책
 - 피난 방향 : 수평 방향의 피난은 복도로, 수직 방향의 피난은 계단을 통함
 - 피난 시설의 안전 구획 : 1차 안전 구획 대상은 복도이고, 2차 안전 구획 대상은 계단 부속실(전실), 3차 안전 구획 대상은 계단임

1. 열전달

-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열적으로 서로 접촉하면 더운 것은 차가워지고 차가운 것은 더워지는 열전달 현상이 일어남
- 열전달에는 전도, 대류, 복사의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흔히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이 복합되어 일어남
 - 1) 전도
 - 물체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열이 전달되는 현상
 - 물질의 직접적인 이동을 수반하지 않고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의 온도차에 의해서 열(에너지)이 흐르는 방식
 - 2) 대류
 - 액체와 기체가 부력에 의해 상하운동으로 열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아랫부분이 가열되면 유체 전체가 골고루 가열됨
 - 대류는 물질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이동시키는 것임
 - 3) 복사
 - 전자기파에 의해 열이 매질을 통하지 않고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직접 전달되는 현상

2. 화재 하중 및 화재 가혹도

- 화재 하중
 - $1m^2$ 의 면적당 가연물의 양을 [kg]으로 나타낸 것
 - 건물 내의 가연물에는 여러 종류의 재료가 있고 연소 시의 발열량도 다르기 때문에 가연물의 양은 실제로 존재하는 가연물을 동일한 발열량의 목재로 환산한 값, 즉 등가목재중량을 사용함
- 화재 가혹도
 - 발생한 화재가 해당 건물과 그 내부의 수용재산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능력의 정도로서 주수율을 결정하는 인자이고, 화재의 강도를 판단하는 척도임

3. 연소 생성물 및 연소 가스

- 화재 시에 발생하는 연소 생성물 : 열, 연기, 화염(불꽃), 연소 가스
- 연소 가스
 - 일산화탄소는 불완전연소 시에 다량 발생하는데, 혈액 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혈액 중의 산소 운반을 저해하고 뇌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산소 부족으로 사망케 함
 - 이산화탄소는 연소 가스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며 완전연소 시 발생하는데, 가스 자체의 독성은 없으나, 다량 존재할 경우 사람의 호흡속도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하여 화재 가스에 혼합된 유독 가스의 혼입을 촉진하여 위험을 가중시킴
 - 기타 인체에 영향을 주는 연소 가스는 포스젠, 아크롤레인, 아황산가스, 황화수소,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등이 있음

4. 연기의 생성 및 이동

- 연기는 완전연소 되지 않은 가연물인 탄소 및 타르 입자가 떠돌아다니는 상태로, $0.1\mu\text{m}$ 이상인 탄소나 타르 입자에 의해 연소 가스가 눈에 보이는 것임
- 연기의 이동
 - 연기는 천장으로 상승하여 체류하면서 벽을 따라 하강하고 바닥에 체류함
 - 건물 내부 온도보다 건물 외부 온도가 높으면 연기는 아래로 이동하고, 반대로 내부 온도보다 외부 온도가 낮으면 연기는 위로 이동함
 - 연소에 필요한 신선한 공기는 연기의 유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유동함
 - 화재실로부터 분출한 연기는 공기보다 가벼워 통로의 상부를 따라 유동하기 때문에 연기는 발화층에서 위층으로 확산됨
- 연기의 제어방법(제연 방법)에는 희석, 배기, 차단이 있음
- 중성대
 - 화재 발생 시 실내와 실외의 압력이 같아지는 영역
 - 중성대의 위쪽은 실내 정압이 실외 정압보다 높아 내부에서 외부로 공기가 유출되고 중성대 아래쪽에는 외부에서 내부로 공기가 유입됨
- 굴뚝 효과
 - 건물의 외부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낮을 때에는 건물 내부의 공기는 밀도 차에 의해 상부로 유동하고, 이로 인해 건물의 높이에 따라 어떤 압력차가 형성되는 현상
- 플래시 오버
 - 옥내 화재가 서서히 진행되어 열이 축적되었다가 일시에 화염이 크게 발생하는 상태
 - 가연성 가스가 동시에 연소되면서 급격한 온도 상승을 유발함
- 백 드래프트
 -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산소 부족으로 불꽃을 내지 못하고 가연성 가스만 축적된 상태에서 갑자기 문을 개방하면 신선한 공기 유입으로 폭발적인 연소가 시작되는 현상으로 감쇠기에 발생함

1. 내화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연화조, 석조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가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내화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2. 목조 건물의 특징적인 화재성상은 **고온 단기형**이다. 목조 건물은 10분 안에 최고 온도인 1300°C정도에 이르나, 내화 건물은 2~3시간 정도 지나야 최고 온도인 1000~1100°C 정도에 이르게 된다.
3. 화재 발생 시 패닉의 원인은 연기에 의한 시계 제한, 유독가스에 의한 호흡 장애, 외부와의 단절로 인한 고립감 등이다. 이에 **스프링클러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줄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4. 피난대책의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①피난 경로는 간단명료해야 한다. ②**피난설비는 고정식 설비위주로 설치한다.** ③피난수단은 원시적 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2방향 이상의 피난 통로를 확보 해야 한다.
5. 목재 연소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①온도 ②수분함유량 ③**목재 연소는 발화 이후의 문제이므로 점화원의 종류는 문제되지 않는다.** ④열 팽창률
6. 건축물의 방화계획에서 건축 재료를 불연화, 난연화 함으로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공간적 대응은 **회피성 대응**이다. 회피성 대응은 내장재의 난연화, 불연화와 방화구획의 세분화, 방화 훈련 등 화재의 발화, 확대 등 저감시키는 예방적 조치 또는 상황을 말한다.
7. 화재 시 인간의 본능적 피난 행동의 특성으로는 ①귀소 본능 ②지광 본능 ③추종 본능 ④**좌회 본능**이 있다. 인간은 주로 좌측으로 통행하고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본능(대부분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므로 주로 오른손 사용이 자유롭게 통행, 회전), 즉 좌회 본능을 가지고 있다.
8. 방화 문에는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을 가진 갑종 방화문과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을종 방화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차열이란 방화문의 성능 기준 중 차열성(열의 차단)은 갖지 못하나 차염성(불꽃의 차단), 차연성(연기의 차단)은 정해진 시간 이상 가능하다는 것이다.

1. 화재 시 화염의 전자기파에 의한 열의 이동 방식은 복사이다. 복사는 전자기파에 의해 열이 매질을 통하지 않고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직접 전달되는 현상이다.
2. 장소 별 화재 하중을 큰 순으로 올바르게 배열하면 **창고 > 도서관 > 사무실 > 교실 순이다**. 참고로 창고: 200~1000 / 도서관: 100~250 / 사무실: 30~150 / 교실: 30~45 이다.
3. 화재 시 발생하는 연소가스에 포함되며, 인체에서 혈액 중의 산소 운반을 저해하고 뇌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산소 부족으로 사망케 하는 것은 **일산화탄소(CO)**이다.
4. 수용성, 맹독성의 무색 기체로 속칭 청산 가스라고 불리는 연소 가스는 **시안화수소(HCN)**이다. 폴리우레탄, 플라스틱, 직물류 등의 불완전연소 시 발생하며 근래에 용접 작업 중 불꽃이 우레탄 폼 등에 옮겨 붙어 화재로 이어져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인명 피해의 주요인이 된 것이 시안화 수소이다.
5.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의 제어 방법으로는 ①희석 ②배기 ③차단 등이다.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냉각**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6. 완전연소 시에 발생하는 연소가스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이다. 이산화탄소는 가스 자체의 독성은 없으나, 다량 존재할 경우 사람의 호흡속도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하여 화재 가스에 혼합된 유독 가스의 혼입을 촉진하여 위험을 가중시킨다.
7. 옥내 화재가 서서히 진행되어 열이 축적되었다가 일시에 화염이 크게 발생하는 상태로 가연성 가스가 동시에 연소되면서 급격한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현상을 **플래시 오버** 라고 한다. 플래시 오버는 화재 발생 후 6~7분경 화재의 성장기에서 최성기 사이에 발생한다. 플래시오버가 발생하기 전까지를 소화를 위한 골든 타임이라 하며 플래시 오버는 엄청난 열기를 내포하기 때문에 방화복을 착용한 소방관들도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8.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풍이나 충격파로서 일명 소방관 살인 폭풍이라 불리는 것은 **백드래프트**이다. 백드래프트는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 발생시 산소 부족으로 불꽃을 내지 못하고 가연성 가스만 축적된 상태에서 갑자기 문을 개방하면 신선한 공기 유입으로 폭발적인 연소가 시작되는 현상으로 감쇠기에 발생한다.

1. 소방시설의 의의

- 소방시설은 화재를 감지해서 통보함으로써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 단계에서 즉시 소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 조작에 의해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기구 및 시스템을 말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소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함
- 특히, 화재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유지해야 함

2. 소방시설의 종류

- 소화 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 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등, 물분무등소화 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 경보 설비
 -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 설비, 시각경보기, 자동 화재탐지 설비, 비상방송 설비, 자동 화재속보 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 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 소화용수 설비
 -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소화수조·저수조
- 소화활동 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통신보조 설비, 연소방지 설비

1. 소화기의 사용법

-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압이며,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소화기임
- 초기 진압에 있어 소화기 한 개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역할을 함
- 소화기 사용 시에는 바람을 등지고 서서 방사하고,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림

2. 옥내소화전의 사용법

- 옥내소화전의 방수구는 각 층마다 설치되며, 초기 소화의 목적으로 관계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창(노즐)을 부착한 호스를 방수구에 연결해 놓고 있음
- 가능하면 2인 1조로 사용하고, 부득이 1인 사용 시에는 개폐 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이동하므로 호스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주의함

3. 완강기의 사용 방법

- 완강기는 화재 또는 그에 준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용자의 자체 무게에 의하여 자동 하강하는 기구로 피난자의 몸무게(100kg 이하)에 관계없이 일정 속도로 하강하여 피난자를 안전하게 지상까지 인도하는 장치임
- 완강기는 여러 명의 피난자가 교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간이 완강기는 한번 도르래에서 풀린 줄을 다시 올리는 기능이 없어서 한번 내려오면 다른 피난자가 사용할 수 없음

4. 자동 화재탐지설비의 구조

- 자동 화재탐지설비는 건축물 내에 발생한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 또는 연기 또는 불꽃 등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건물 내의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화재 발생을 알리는 설비로서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발신기, 경종, 표시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1. 옥내소화전 설비의 가압송수장치 기동표시등은 옥내 소화전함 상부에 **적색 등**으로 설치된다.
2. 소화기의 능력 단위에 대한 설명
 - ① 소화기의 능력 단위는 용기 내에 충전되어 있는 소화 약제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 ② **동일한 소화약제량이라도 A급 화재와 B급 화재에 대한 능력 단위는 다르다.**
 - ③ C급 화재에 대해서는 능력 단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소화기의 능력 단위를 판정하려면 능력 단위 측정 모형으로 모형시험을 한다.
3. 옥내 소화전함 안에 설치하는 기구는 소화호스, 앵글밸브, 관창으로 **배수 밸브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자동 화재 속보설비는
 - ① 자동 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 ② **종합 방재실이 설치되어 있어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 ④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숙박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 상영관, 지하상가로 **모든 의료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6. 화재가 발생한 경우 천장면 등에 부착되어 있는 헤드의 감열 부분이 용융 또는 파괴되어 헤드가 개방되거나 화재감지기에 의해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서 소화를 이루게 하는 자동 소화 설비는 **스프링클러 설비**이다.
7. 2017년 2월부터 자동 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하도록 한 경보 설비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
8.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는 **소화용수설비**이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형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는 **20m 이내**이다.

2. on-off 기동방식의 옥내소화전의 관리 방법은
 - ① 소화전함이나 그 부근에 조작 설명서 부착한다.
 - ② 옥내소화전 앞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 ③ **전원을 항상 ON 상태가 되도록 하고 표시등을 점등된 상태로 유지한다.**
 - ④ 호스는 지그재그 형태로 꼬이지 않도록 수납한다.

3. R형 수신기는
 - ① 하나의 선로를 통하여 많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어 경제적이다.
 - ② 선로 길이를 길게 할 수 있다.
 - ③ 증설 및 이설이 용이하다.
 - ④ **중계기 설치가 필요하다.**

4. 지하 5층, 지상 35층인 건물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선 경보해야 될 층은 **1~5층, 지하 1층 ~ 지하 5층**이다.

5. 소화기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 ① **소화기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눈에 잘 띄게 설치한다.**
 - ② 습기가 적고 건조하며 서늘한 곳에 설치한다.
 - ③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 부식 등을 확인한다.
 - ④ 분말 소화기는 가끔씩 약제를 흔들어주면 좋다.

6. 옥내소화전함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옥내소화전함의 방수구(개폐밸브)는 층마다 설치한다.
 - ②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에 설치한다.
 - ③ 옥내소화전함의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한다.
 - ④ **표시등의 색상은 적색으로 한다.**

7. 자동 화재탐지설비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감지 대상은 열, 연기, 불꽃으로 **점화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1. 계절별 화재 원인과 예방 요령

- 봄철 화재
 - 주로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며 건조한 기상조건으로 진화에도 어려움이 있음
 - 사계절 중 산불이 가장 많아 주의 필요
 - 봄철 화재 취약 대상 파악 → 집중적인 방화 순찰 및 위험 요소 제거
- 여름철 화재
 - 고온 다습한 기후 조건으로 인한 누전 발화, 냉방기 등 과열화재, 자동차의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
 -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누전차단기 설치, 문어발식 코드 사용 금지, 휴가 시 가스밸브 차단, 누수상태 점검, 차량의 철저한 점검 등이 필요
- 겨울철 화재
 - 전열기구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부주의와 제품 불량으로 인해 겨울철 화재 발생은 늘어나고 있음
 -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두도록 하고, 퓨즈는 정격용량의 규격 퓨즈를 사용하고 고온의 전열기구에는 반드시 절연 고무 코드 사용
 - 석유난로는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주유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함
 - 난로 주위에는 항상 소화기나 모래 등을 비치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

2. 원인별 화재 예방 요령

- 담뱃불 화재 예방 요령
 -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기
 - 담배꽂초 불씨는 완전히 제거한 후 버리기
- 전기 화재 예방 요령
 -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반드시 정격 용량 제품을 사용
 - 건물이나 대용량 전기기구는 회로를 분류해 누전차단기를 설치
 - 전기기기는 사용 후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놓고, 한 콘센트에 여러 개 플러그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을 금함
- 가스 화재 예방 요령
 - 가스 사용 전후 철저한 안전점검과 안전한 가스기구 선택
- 유류 화재 예방 요령
 - 예방 요령은 급유할 때는 반드시 불을 끄도록 하고, 열기구 가까이에 가연성 물질을 놓아서는 안 되며, 난로 주변에는 소화기나 모래 등을 준비
- 불티 화재 예방 요령
 - 용접 작업이나 쓰레기를 소각할 때는 소화기나 소화수 등을 비치
 - 용접 작업장 부근의 연소 위험이 있는 위험물이나 가연물을 제거한 후 작업

-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 예방 요령
 - 어린이들은 손에 닿기 쉬운 것이면 무엇이든 가지고 불장난을 하게 되므로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성냥,ライター 등은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교육
 - 외출 시에는 모든 화기의 안전점검을 하고 어린이들에게 불조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

3. 화재 신고 요령

- 화재 발생 시 먼저 침착하게 일반 전화기 또는 핸드폰으로 국번 없이 119번으로 신고 전화한 후 화재 신고임을 밝힘
- 화재 발생 주소 및 건물명과 화재가 발생한 층을 알림
- 건물의 간략한 소개
- 화재의 종류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알림
- 화재신고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알림

1. 장소별 화재 예방 요령

- 주택·아파트 화재
 - 주택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그 다음으로 나타남
 - 모든 화기는 사용 시 취급상의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성냥이나 라이터, 양초 등은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들에게 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
- 차량 화재
 - 차량 화재는 주택 화재 다음으로 많은 화재 발생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 차량 화재는 인화성이 강한 유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확대되어 인명피해의 위험이 높음
 - 평상시 배선의 상태, 연료계통, 점화장치의 점검을 철저히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든 차량의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 사용법을 익혀둘 것
- 공장·작업장 화재
 - 공장 화재의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전기로 인한 화재
 - 자체적인 소방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자위소방 조직을 편성하고 유사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
- 시장·점포 화재
 - 시장 화재는 전기 화재가 가장 많고, 수 없이 드나드는 상인이나 손님들이 버린 담뱃불,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난로 등이 주요 원인
 -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자체 점검을 철저히 하며 소방시설 사용요령 등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 고층건물 화재
 - 이러한 화재는 사무실용 건물보다 호텔이나 복합건물 등에서 많이 발생
 - 모든 계단은 층별 방화구획이 되도록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고, 냉난방 덕트 등에는 방화 댐퍼와 같은 유효한 방화설비를 설치

2. 화재 시 단계별 행동 요령 및 피난 시 유의 사항

- 발화 초기
 - 초기 발견자는 주위 사람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린다. 그리고 자동 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발신기를 누름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모래주머니,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
 - 자체 소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로 신고하고, 신속히 안전 지구로 대피
- 고층 복합건물 등에서의 피난유도 요령
 - 건물 구조를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겁을 먹게 되어 이성을 잃고 무분별한 행위를 하게 되므로 화재 시에는 그 건물 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적절한 피난

유도를 해야 함

- 건물 내부에는 두 개 이상의 피난통로를 설치하여 유사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피난 시 유의 사항
 - 화재 발생 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
 - 연기 속을 통과하여 피난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피난
 -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한다.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

3. 화재 발생 시 장소별 행동 요령

-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갇혔을 때의 행동 요령
 - 가능하면 도로가 보이는 안전한 방으로 들어갈 것
 - 불이 난 실내 쪽의 문을 닫음
 - 119에 전화하여 층수, 위치, 방 번호, 무엇이 타는지, 몇 사람이 갇혔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림
-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연기를 뚫고 탈출하기
 - 외부가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대피를 시작
 -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자세를 낮게 유지하여 손과 무릎으로 기어서 나오며 이때 숨은 코로 짧게 내쉴
- 옷에 불이 붙었을 때의 행동 요령
 - 당황하거나 뛰지 말아야 하며 뛰거나 몸을 흔들면 불이 더 크게 번지게 될 수 있음
 -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굴러야 한다. 불꽃이 꺼질 때까지 계속 구릅니다.
- 불이 난 건물에서의 피난 요령
 - 피난 시설 및 피난기구 없이 아래층으로 피난할 때는 커튼 등으로 줄을 만들어 타고 내려감
 -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려야 하며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대기
 -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통로의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피난
- 지하철에서의 화재 시 행동 요령
 - 노약자 장애인석 측면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
 - 객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
 - 출입문을 열고 철도로 대피 시에는 반대 차선의 열차에 주의
 - 호흡기를 수건이나 물티슈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
 - 정전 시에는 유도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며 어두운 경우에는 자세를 낮추어 빛이 보이는 쪽으로 대피
- 버스 화재 시 행동 요령
 - 먼저 주위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침착하게 안전벨트를 풀며 소화기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불을 끄
 - 초기에 불을 끄지 못 했을 경우 출입문으로 탈출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좌석 양 옆에 붙어있는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

- 유람선 등 화재 시 행동 요령

- 화재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화재 사실을 알림
-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고 창문 등을 깨서 환기를 시킴
- 의자 밑 또는 선실 내 보관된 구멍조끼를 입고 물속에서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신발을 벗음
- 출입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선내에 비치된 망치나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창문을 깨고 탈출

1. 봄철 화재의 주요 원인은 화창한 날씨로 인한 주의력 저하, 건조한 날씨,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한 강한 바람으로 **강한 복사열은 여름철 화재의 특징이다.**

2. 계절별 화재는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① 봄철인 3월부터 5월까지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조그마한 불씨라도 삼시간에 큰 불로 확대될 수 있다.

②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기후조건으로 인한 누전 발화, 냉방기 등의 과열화재, 자동차의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하고 있다.

③ 겨울에는 난방 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난방 기구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④ **사계절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봄철이다.**

3. 전기화재의 원인은 전기화재의 원인은 단락(합선), 과전류(과부하), 누전, 절연불량, 전열기기 과열 등으로 **승압에 의한 발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4. LPG와 LNG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①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누설되면 낮은 곳에 체류하고,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누설되면 높은 곳에 체류한다.**

② LPG의 주성분은 부탄과 프로판이다.

③ LNG는 누설 시 주성분인 메탄이 기화하면서 수분 응축으로 안개가 생기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다.

④ LPG는 LNG보다 폭발할 위험이 더 크다.

5.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겨울철 > 봄철 > 가을철 > 여름철 순으로,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6. 화재는 **부주의**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한다.

7. 화재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① 화재 발생 주소 및 건물명과 화재가 발생한 층을 알린다.

② 건물의 간략한 소개를 한다.

③ 화재의 종류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알린다.

④ **화재신고 시 화재신고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알린다.**

8. 불티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작업은 **용접 작업**으로 용접 부주의로 불티가 가연물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다.

1. 소화기 비치의무를 가진 차량은 화물차, 승합차, 버스로 **4인승 승용차는 의무비치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공장 화재에서 가장 많은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다. 공장의 경우에는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관계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부주의로 인한 화재보다 많다.

3. 발화 초기 발견자의 초기 대응은 다음과 같이 해야한다.
 - ① **소화 설비를 이용할 경우 소화약제는 화염이 아닌 화원에 방사한다.**
 - ② 소화에만 정신이 팔려 화염이나 연기에 갇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③ 자체 소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로 신고하고, 신속히 안전 지구로 대피한다.
 - ④ 대피 시에는 연기와 화염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반드시 방화문을 닫으면서 대피한다.

4. 건물 화재 시 피난 요령은 다음과 같다.
 - ① 피난 시설 및 피난기구 없이 아래층으로 피난할 때는 커튼 등으로 줄을 만들어 타고 내려간다.
 - ②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린다.
 - ③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통로의 유도 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피난한다.
 - ④ **고층건물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이용하지 않는다.**

5. 화재 발생건수는 단독 주택(6,248건) > 공동 주택(4,907건) > 자동차(4,564건) > 음식점(2,777건) > 공장시설(2,682건) > 기타 건축물(2,072건) > 창고시설(1,233건)의 순서로 **단독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6. 특정 소방대상물 내에서 화재를 처음 발견한 甲이 혼자 사용할 수 있는 소화 설비는 소화기, 간이 소화용구로 **옥외소화전은 3인 1조 내지 2인 1조로만 사용할 수 있다.**

7. 화재 발생 시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질식사**이다. 화재로 인한 사망 중 60% 이상은 화염이 몸에 닿기 전 질식으로 사망한다.

1. 감정노동 관리방안 (회사 차원의 관리방안)

- 감정노동 관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
- 적정 서비스 기준 및 고객 응대매뉴얼 등 “근로자 자기보호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
- 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장에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
-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직장문화를 조성
-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
- 근로자의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2. 감정노동 관리방안 (개인 차원의 관리방안)

- | | |
|---------------|----------------------------------|
| • 명상 | • 생활습관개선 |
| • 복식호흡법 | • 힘들 때,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상사나 동료들 만들기 |
| • 근육이완법 | •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기 |
| •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 • 규칙적 운동, 규칙적 식생활 등 긍정적이고 |
| • 자신의 감정 털어놓기 |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기 |
| • 자기주장훈련 | •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
| |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

1. 직무스트레스

- 말은 일로 인해 심하게 압박감을 받을 때나 근로자의 능력 밖의 큰일이거나 많은 일 또는 하기 싫은 업무를 할 때 나타나는 신체적 및 심리적 반응
- 직장인들이 많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하나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또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지시 받을 경우임
- 똑같은 직무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좋은 자극 또는 직무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

2. 직무스트레스의 원인

- 직무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 > 불균형
-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
 - > 업무의 수준이 나의 처리능력보다 높은 경우
 - >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원인 중 조직 관련요인에 따른 스트레스를 실험한 자료

구분	특징	직무만족도 · 작업수행	스트레스
중앙 집중적 조직구조	최고 경영층의 의사결정	↓	↑
탈 중앙 집중적 조직구조	자신의 작업통제권	↑	↓

- 물리적 환경의 예
 - > 사무실의 책상이 수직적 배치
- 업무시간의 예
 - > 인건비 문제로 2명이 일할 양을 1명이 하는 경우
 - > 24시간 교대제 시행
- 대인관계 갈등의 예
 - > 스트레스 중 가장 힘든 것이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 > 공포 분위기 조성, 부당한 초과근무 강요, 직원 폭행
-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관계
 - > 조직 내 요인, 조직 외 요인, 개인적 요인에 의해 직무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 결정
- 직무만족
 - >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갖고 있는 태도
 - > 개인의 정서 반응
 - > 조직 구성원이 직무에 대해 원하거나 기대하는 정도와 그 직무에서 실제로 얻는 것과 비교되는 결과
 - > 직무에 대해 개인적 반응이며, 과제 또는 직무에 대한 감정적 반응

3. 직무스트레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직무스트레스
 - >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침
 - > 만성피로 및 과로사 초래
 - > 직무의욕 감소 및 실수와 사고 초래
- 스트레스에 대한 인체반응
 - > 경고반응(Alarm Reaction) : 생리기능을 관장하는 교감신경계 흥분
 - > 저항단계(Stage Of Reaction) :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하거나 저항을 함
 - > 소진단계(Stage of Exhaustion) : 신체적 방어 붕괴, 적응 에너지 고갈
- 스트레스와 신체 질환
 - >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위·십이지장궤양, 부인과 질환
-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 > 불안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공황장애, 폭식과 비만, 스트레스와 음주
- 직무스트레스와 심혈관계 질환
 - >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동맥경화증, 뇌졸중 등
-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
 - > 목부터 다리까지 광범위하게 발생가능
 - > 대표적으로 수근관 증후군, 건염, 요통 등
- 직무스트레스의 결과
 - > 조직적 수준 : 생산성 저하, 불필요한 손실 발생, 직장 이미지 악영향
 - > 개인적 수준 : 다양한 신체 병리적 또는 정신병리적 증상 경험, 장기적으로는 특정한 형태의 질병에 걸리기 쉬움

1. 감정노동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빈도, 주의성, 다양성, **부조화**가 있다.
2. 감정노동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감정노동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 ② 고객과 대면과정에서 감정 조절이 필요하다.
 - ③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감정노동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 ④ 서비스 종사 근로자는 감정노동 고위험군에 속한다.
3. 감정노동과 신체 건강영향에 대한 설명
 - ① 근무시간 동안 손님 응대를 위해 계속 긴장된 상태를 유지
 - ② **소화기질환이나 뇌심혈관계질환과의 상호 연관성은 높음**
 - ③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빨리 뛰고 혈압은 높게 유지
 - ④ 적절히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신체건강 이상 초래
4. 감정노동을 관리하기 위한 개인차원의 관리는 명상, **근육이완법**, 복식 호흡법,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자신의 감정 털어놓기 등이 있다.
5. 감정노동을 관리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한다.
6. 감정노동에 대해 개인 차원의 관리 방안 중 근육에 주의를 집중시켜 불필요한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근육이완법**이 있다.
7. 고객과 갈등 발생 시 회사의 조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좋다.
 - ① 근로자 및 고객 모두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 ② 고객과의 갈등 발생 근로자에 대한 휴식시간 부여
 - ③ **고객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고객의 이야기만 듣거나 관리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질책을 하지 않는다.**
 - ④ 조직에서 개선해야 대책 마련
8. 감정노동 관리방안 중 회사차원의 관리는 감정노동 관리 정책 마련, 악성고객 대응 규정 마련, 근로자 자기 보호 매뉴얼 보급이 있다. **복식호흡은 개인차원의 관리방법이다.**
9. 감정노동의 대표적인 직업군으로는 콜센터 상담원, 마트 및 백화점 종사자, 요양 보호사와 공공서비스 종사자 등이 있다. **농업 종사자는 감정노동 직업군과 거리가 멀다.**

1.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신체적 장애의 종류로는 고혈압, 편두통, 위경련이 있다. 또한 **유기 용제 중독은 화학물질 취급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애이다.**

2.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으로는 **일이 바빠서 휴식시간을 내기가 어려움**, 바깥 공기를 쐬기 어려운 근무환경, 휴식공간이 부족하거나 시설이 낙후, 오랫동안 서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음 등이 있다.

3.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 갈등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 갈등에서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친절해야 하는 감정노동
 - ②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음
 - ③ **업무량과 업무 일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음**
 - ④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음

4.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으로는 휴식공간 마련, **음주와 흡연보다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 교대 근무 관리, 근육이완법 실시 등이 있다.

5.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 중 양손을 아랫배에 대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방법인 **복식호흡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

6. 직무 스트레스 관리방법 중 개인적 관리방안으로는 약물치료, 자기 관찰, 분노 조절 훈련이 있다. **또한 적절한 작업 배치는 조직적 관리방안이다.**

7. 직무 요구의 내용으로는 **매출에 대한 압박**, 업무시간 내내 자신이 업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주 바뀌는 업무시간 및 장시간 노동, 교대 근무가 있다.

8. 직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직장 문화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
 - ① 소속회사와 근무하는 장소가 자주 바뀌는 경우
 - ② 상사나 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받는 경우
 - ③ **외모와 연령 등에 차별을 받음**
 - ④ 고객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받는 경우

9. 회사에서 직무 스트레스 관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생산성 증가, 근로자 건강 증진, 건강보험 부담금 증가 등이 있다. **이에 사장님의 개인적인 관심은 해당되지 않는다.**